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15.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20년 11월 12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0년 11월 19일

라. 상정일자: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0. 12. 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영등포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금 및 산출내역

- 출연금액: 19,951천원

- 산출기초: 2019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153,464,296천원의

1만분의 1.3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서,
-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강제되어 있으므로 사업비 출연은 의무사항임.
 -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액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1.2로 하향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1.1.1. 시행예정이나 연차적 하향조정을 위해 부칙에 특례조항으로 2021년에는 1만분의 1.3의 비율을 적용하고 있음.
-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률적 특이사항은 없음.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안 번호	280
----------	-----

제출년월일 : 2020. 11.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 이유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 골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9,951천원을 출연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출연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나.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다. 사업내용

- 지방세제 개편과 지방재정 발전 방안, 지역 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
- 지방세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간행물 발간, 포럼 운영
- 지방세무 공무원 교육, 자치단체 소통 협력 등 지원 사업

라. 출연 필요성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그 경비 충당을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함.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효율적 인력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통한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및 지방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필요.

마. 출연금액(소요예산)

- 범 위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 출연금액 : **19,951천원**
- 산출기초 : 2019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153,464,296천원의 1만분의 1.3
- ※ 출연 가부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 후, 세부 출연금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통해 확정

4. 참고사항

○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참 고 사 항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 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 1. 1만분의 1.2
 -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 3. 지방세의 연구·홍보
 -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